

안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164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03.
제출자 : 안산시장

□ 제안이유

-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중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와 동일하게 지방세(시세)를 감면하도록 조례개정 표준안이 시달(행정자치부)됨에 따라 동 조례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.

□ 주요골자

- 종전 자동차세 감면 대상인 국가유공자에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자를 추가함 (안 제2조제2항).

□ 개정조례안 : 별첨

□ 신·구조문대비표 : 별첨

□ 관계법령 발췌서 : 별첨

- 지방세법 제7조

□ 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없음

□ 예산수반사항 : 해당없음

□ 사전예고(결과) : 해당없음

- 입법예고 : 2003. 8. 22. ~ 2003. 08. 31.

□ 기타 참고사항 : 별첨

- 지방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(안) : 행정자치부

안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

안산시시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중 “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” 다음에 “,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자(이하 이 조에서 “국가유공자등”이라 한다)”를 삽입하고, 이하 동항중 “국가유공자”를 각각 “국가유공자등”으로 하며, “국가유공자와”를 “국가유공자등과”로 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일반적인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.

소관 실·과		세 정 과
임 안 자	실·과장 직위·성명	세정과장 박 영 운
	담당·팀장 직위·성명	세정담당 김 항 용
	담당자 성명·전화	양 태 호 (행정 2181)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국가유공자 '유족등에 대한 감면) ① (생략) ② 국가유공자등에우 및 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 <삽 입> 가 본인 ·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국가유공자의 직계 존 · 비속, 국가유공자의 직계비속의 배우 자, 국가유공자의 형제 · 자매의 명의로 등록(국가유공자 본인이외의 명의로 등록 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 록하는 경우에 한한다)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취득한 1대(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 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감면신청하여 등록한 날부 터 30일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. 1. ~ 4. (생 략) ③ (생 략)	제2조(국가유공자 유족등에 대한 감면) ① (현행과 같음) ② _____ _____.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자(이하 이 조에서 "국가유 공자등"이라 한다) ----- 국가유공자등 ----- 국가유공자등 ----- 국가유공자등 ----- 국가유공자등 ----- 국가유공자등과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1. ~ 4. (현행과 같음) ③ (현행과 같음)

안산시시세감면조례증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1164
----------	------

제안년월일 : 2003. 9. 24.
제 안 자 : 의회행정위원장

1. 수 정 이 유

- 일부 불명확한 조문 내용을 행정자치부 표준 조례(안)에 근거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일부 조문 내용을 수정하고자 함.

2. 주 요 골자

- 제2조제2항 중 “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”을 “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 등급 1급 내지 14급에 해당하는 자”로 수정함.

안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안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2조제2항 중 “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”를 “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 등급 1급 내지 14급에 해당하는 자”로 한다.

신 구 대 비 표